

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인천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윤철민

전화 032-861-5052 / 팩스 032-860-4359

보도참고자료  
2020. 1. 10.(금)

제 목

## 인천 관내 주택재개발조합 비리사건 수사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 
(제11조 제1항)

-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. 12. ~ 2020. 1. 인천 계양구 소재 주택재개발조합의 前 조합장 A○○(61세)와 조합 임원, 조합 관련 용역업체 운영자 등 9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, 정비업체 대표 B○○(53세) 등 2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,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
- 조합장 A○○('20. 1. 10. 불구속기소)는 조합의 정비업체, 철거업체 등 용역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업체선정 또는 대금지급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합계 6,6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, 조합 임원들도 조합장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여 수수된 금품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
- 한편, 조합의 前 정비업체 대표 등 2명('19. 12. 12. 구속기소)은 조합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준다는 구실로 정비용역계약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의 60%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, 그 중 4억 1,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- 이 사건은 경찰이 조합장 등의 뇌물혐의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, 검찰은 보완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, 엄정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할 재개발조합의 정비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, 전임·후임 정비업체들 사이에서 거액의 선정 대가가 수수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여 정비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한 후 함께 기소하였음

**- 피고인 별 사건처분 요약-**

순번	피고인	범죄사실 요약	처분
1	AOO(61세) 조합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3. 2.~'14. 3. 조합이사 E와 공모하여, 설계용역대금의 조속한 지급에 관한 청탁을 받고 설계업체 丁회사 직원 H로부터 현금 3,000만 원 뇌물수수</li> <li>'16. 7. 乙회사의 정비업체 선정 및 조속한 대금지급 청탁 등 대가로 乙회사 前 대표 C로부터 현금 3,000만 원 뇌물수수</li> <li>'17. 3. 철거업체 丙회사 대표 G로부터 향응 150만 원 뇌물수수</li> <li>'18. 4. 조합이사 F와 공모하여, 戊회사 대표 K로부터 회갑연 비용 등 구실로 현금 500만 원 뇌물수수</li> <li>'17. 8.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戊회사 등 4개 업체와 약 15억 원 상당 계약 체결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기소 (판사영장 기각)
2	BOO(53세) 前 정비업체 甲회사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7. 6.~'18. 12. C와 공모하여, 조합장에게 청탁하여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는 구실로 乙회사 대표 D로부터 합계 4억 1,500만 원 수수 [변호사법위반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</li> </ul>	'19. 12. 12. 구속기소
3	COO(48세) 現 정비업체 乙회사 前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7. 6.~'18. 12. B와 공모하여, 위 2.항과 같이 합계 4억 1,500만 원 수수 [변호사법위반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</li> <li>'16. 7. 위 1.항과 같이 A에게 현금 3,000만 원 뇌물공여</li> </ul>	'19. 12. 12. 구속기소
4	DOO(42세) 現 정비업체 乙회사 現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7. 6.~'18. 12. 정비업체 선정 관련하여, 위 2, 3.항과 같이 B, C에게 4억 1,500만 원 공여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</li> </ul>	'19. 12. 12. 불구속기소
5	EOO(58세) 조합 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3. 2. ~ '14. 3. 조합장 A와 공모하여, 위 1.항과 같이 용역대금 지급 관련하여 丁회사 직원 H로부터 합계 3,000만 원 뇌물수수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 기소
6	FOO(49세) 조합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8. 4. 조합장 A와 공모하여, 위 1.항과 같이 A의 회갑연 비용 등 구실로 戊회사 대표 K로부터 현금 500만 원 뇌물수수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 기소
7	GOO(47세) 철거업체 丙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7. 3.~'17. 5. 위 1.항과 같이 조합장 A에게 150만 원 향응 제공, 철거업체 선정 관련 A에게 현금 1억 원 뇌물공여 의사표시</li> <li>'17. 11. 丙회사 자금 3,000만 원 업무상횡령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 기소
8	HOO(49세) 설계업체 丁회사 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3. 2.~'14. 3. I, J와 공모하여, 위 1.항과 같이 설계용역비의 조속한 지급을 청탁하며 A, E에게 합계 3,000만 원 뇌물공여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 기소
9	IOO(49세) 丁회사 본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순번 8번과 동일 (H, J와 공모)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 기소
10	JOO(52세) 丁회사 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순번 8번과 동일 (H, I와 공모)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 기소
11	KOO(52세) 철거업체 戊 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8. 4. 위 1, 6.항과 같이 A, F에게 현금 500만 원 뇌물공여</li> <li>'18. 4. 戊회사 자금 500만 원 업무상횡령</li> </ul>	'20. 1. 10. 불구속 기소